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84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황윤철

피 고 1.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군산시 중앙로2가 141-12

대표자 이사장 권병길

2.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울산 남구 삼산동 1563-8

대표자 이사장 최상문

3.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대표이사 서진원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신묵, 강찬우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이경환, 이한길

변론 종결 2015. 2. 26.

판결 선고 2015. 3.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은 원고 전상기에게 265,000원, 피고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은 원고 심민보에게 1,050,000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 양덕태에게 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상기는 2009. 4. 30. 피고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과, 원고 심민보는 2009.

5. 9.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과, 원고 양덕태는 2003. 12.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각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미리 마련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각 약정서 및 계약서에는 ①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본인', '은행' 또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한 부담주체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②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채무자', '설정자' 또는 '채권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두어 그 선택한 부담주체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위와 같은 체크박스 선택방식의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각 비용 항목별로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는 체크박스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원고 전상기는 265,000원, 원고 심민보는 1,050,000원, 원고 양덕태는 37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가 7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출약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의 부담주체 및 근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등록세 등 제반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위 각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인지세 및 근

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 214864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제반 거래 조건을 비교 형량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으로서 구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협정)을 거친으

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들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후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1 내지 21호증, 을다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한다)가 2002. 12. 경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 한다)에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과 같은 형식과 내용인 '선택형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라 한다)이 있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 경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 등을 받고,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 따라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절차를 거쳐 비용별로 부담자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는 취지로 이를 개정한 뒤, 2008. 2. 11.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개정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이라 한다)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다.

3)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표준약관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은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행정적인 조치로서, 위 구 약관규제법 규정은 이러한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과는 별도의 절차적 요건과 법적 효과 등을 정하고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만을 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에서는 인지세나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은

이를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약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고객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따라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나 이와 동일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인지세 및 근저당권정 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관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이정호



판사

박나리

박나리



판사

김국식

김국식



열람용

열람용